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9. 2. 김성희 의원 외 6인
- 나. 회부일자: 2020.9.3.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0.9.9.)
  -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김성희 의원】

### 가. 제안이유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3)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4) 지원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 5) 구매 촉진,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안건은 2020년 9월 2일 김성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으며 202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됨.
- 이 조례안은 마포구 장애인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순서대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장애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대상,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우대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근거법령인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조문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8월 기준 마포구 등록장애인 수는 13,029명이며 장애인가정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장애인 자녀의 ‘취업’이며 이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취업 또는 창업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와 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그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참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고용률 준수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감수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 자립을 위한 창업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참고자료 1】

### 타 시·도(군, 구) 조례 제정 현황

NO	자치단체	조례명	제/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6-07-19
2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10-30
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09-16
4	강원도	강원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03-08
5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07
6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02-15
7	경상남도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2015-12-10
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2017-12-20
9	경상북도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19
10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6-09-28
1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2019-04-15
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10-30
13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2-12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9-04-19
1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5-01-01
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7-01-05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5-10-12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7-09-27
19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1-01
2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6-12-20
2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2018-05-17
2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08
23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04
24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018-11-09
25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09-20
26	충청북도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2014-10-31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 【참고자료 2】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